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6도8798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진보라(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노346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

람표 연번 3, 4 기재 부분(이하 '대상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반도체 칩 입·출력부와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와이어본딩 공정에 사용되는 '캐필러리'를 제조·공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2007년경 입사하여 2021. 3.경부터 피해회사의 중국 법인 기술팀 차장으로 근무하다 2025. 3. 5.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고, 2025. 3. 10.경부터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중국 △△△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2025. 4. 18.경부터 2025. 4. 19.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직원 공소외인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P1 일일 생산 현황 자료'(파일명: 250411_P1 일일생산현황.pdf), 'P2 일일 생산 현황 자료'[파일명: P2 일일생산현황(25.04.16).pdf,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전송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쟁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료를 통하여 피해회사의 공정관리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접근 가능한 인원이 제한적인 제1심판결의 '열처리 공정 레시피' 파일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자료와 달리 이 사건 자료는 단순 노무자를 제외한 피해회사 직원 모두가 그룹웨어에서 열람·인쇄 등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자료에 별도로 비밀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해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대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상당한 노력'이라는 문구가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로 바뀌었고,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라는 문구가 '비밀로 관리'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개정하고 다시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한 취지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어떠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한다는 자신의 비밀관리의사를 내부 임직원이나 거래상대방 등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 또는 고지를 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비밀관리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한다.

어떠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한 비밀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도 및 방법과 아울러, 침해자의 지위,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

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자체의 성질이나 중요성 및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분야나 형태,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영업비밀 보유자가 속한 사업 분야의 일반적인 보안수준이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완벽한 수준과 내용의 비밀관리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영업비밀 해당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회사는 반도체 정밀 자재 전문 업체로서 전 세계 캐필러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다. 캐필러리는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과정에서 와이어본딩 작업에 필요한 도구로서 고성능 반도체 제조에 있어 캐필러리의 정밀성, 품질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피해회사가 영위하는 캐필러리 제조·공급 사업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성취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갖는다.

나)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의 국내 공장 및 중국 소주(Suzhou) 공장의 각 일일생산현황 자료로서, 각 공장별 생산량 외에 전체 공정의 순서, 장비의 운영현황,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법과 공정별 불량원인, 불량률, 재고현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 그룹웨어 내 '생산실적 게시판'에 게재되어 그 임직원들이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공유되었다. 중국 공장 직원의 경우 국내

공장 일일생산현황 자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사건 자료는 단순 노무자를 제외한 피해회사 임직원의 상당수가 그룹웨어에서 열람·인쇄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자료 자체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자료를 피해회사 임직원이 그룹웨어에서 열람한 경우 그 열람자 및 열람시각, 열람횟수 등이 전산에 기록되어 이를 관리자가 사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라) 피해회사는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룹웨어에서만 파일 첨부를 허용하고, 문서 출력물에는 워터마크가 표시되도록 하는 한편, 피해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 역시 이러한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 및 보안 정책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회사는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 윤리강령 준수서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5. 1. 1.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피해회사의 '제품 및 상품의 생산, 공정 등 제품 제조나 수리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 등이 포함된 비밀준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자료를 그 임직원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서 접속할 수 있는 그룹웨어 게시판 내에 게재하고, 이에 대하여도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을 적용

하는 등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이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운용하는 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를 취하였다.

나)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 국내 공장 및 중국 공장의 각 일일생산현황으로, 공장별 생산량 외에 전체 공정의 순서나 공정별 불량원인 및 불량률 등 캐필러리 제품의 생산 및 공정관리 기술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경쟁사 등이 이 사건 자료를 취득하는 경우 피해회사의 공정관리 기술 노하우 등 경쟁상의 이익을 제공할 만한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쟁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정 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 등 공정관리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자료를 취득한 것은 이러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회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 성취를 필요로 하는 고성능 반도체 정밀 자재 업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로서는 이와 같은 이 사건 자료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비밀준수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위 비밀준수계약서에는 정보유출을 금지하는 대상으로 '제품 및 상품의 생산, 공정 등 제품 제조나 수리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가 적시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경쟁사의 활용 가능성 및 이에 대한 피해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인식 가능성, 피해회사의 사업 분야 및 일반적인 관행 등 피해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회사의 내부 임직원으로서는 이 사건 자료가 다른 일반적인 정보와 구별되어 위 비밀준수계약서에 적시된 영업비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비밀이라고 인식

될 수 있는 표지 또는 고지를 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자료에 담긴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된다는 사실은 내부 임직원 등이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전체 공정 순서나 일일 생산량, 목표 수량, 재고 현황 등의 정보는 피해회사 임직원 대부분이 각자의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의 정보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단순 노무자를 제외한 피해회사 임직원 상당수가 이 사건 자료를 그룹웨어에서 열람·인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자료를 그룹웨어에서 열람·인쇄하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을지라도, 그 열람자 및 열람일시, 열람횟수가 전산에 기록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이로써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에 대한 접근 및 무단 유출을 식별·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비밀로 관리된' 정보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대상 공소사실 부분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그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므로(다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위 파기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

주 심 대법관 이숙연 _____